

제288회 임시회
성북구의회

의안
번호 제482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전문위원 이 명 주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482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2. 3. 31.
- 회 부 일 : 2022. 4. 1.

2. 제안이유

중소벤처기업부의 ‘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(안)’ 수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·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’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‘해당 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’ 요건 삭제 (안 제3조제1항제2호, 제3호 삭제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(안)」

제3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) ①(생략)

1.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2.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(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)의 동의<삭제>
3.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<삭제>
4.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

다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(2022. 2. 24. ~ 3. 16.)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치법규(안)이 수정되어 자치법규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하는 사항으로
- 기존 표준 조례안에서 제시되었던 ‘토지·건축물 소유자의 1/2 이상 동의’ 조항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신청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해 “전통시장·상점가에 준하는 수준”으로 지원하면서 기준요건 또한 골목상권의 특성을 담지 못하여 지정을 어렵게 했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